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9,038,1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38,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9.경 위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3. 11. 9.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4. 4. 12. 기준 합계 29,038,155원(= 원금 23,417,067원 + 미수이자금 5,621,088원)이다.

대출기관	D(주)	D(주)	E(주)	F(주)
대출과목	일시불	리볼빙신폰	캡론	신용카드
대출잔액(원금)	-	844,481	21,733,203	839,383
채권양도금액(원금)	-	844,481	21,733,203	839,383
㉔ 채권양도당시 미수이자금	256	751,551	1,921,374	65,001
㉕ 현 대출잔액(원금)	-	844,481	21,733,203	839,383
㉕ 채권양도 이후 이자금 (2024. 3. 4. 기준)	-	103,983	2,676,084	102,839
합계(㉔+㉕+㉕)	256	1,700,015	26,330,661	1,007,223

라. C는 2019. 10.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9,038,1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9,038,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3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공인중개사 G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 880,000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C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기일에 맞추어 모두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C의 구체적인 자력 상황 등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별지